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 부대 동원 제한 및 처벌 규정 신설〉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3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1.
3. 회부연월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군 부대가 국가시책 사업 등에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인력의 대민지원 동원은 2013년 6만 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 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군 부대 동원이 증가하면서 군 인력이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대응이나 대민지원에 동원되거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여 무리하게 재난현장 등에 동원되면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 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군사 목적의 부대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 동원 외에는 상관이 부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재난대응 활동을 명령·지시할 수 없도록 하며, 재난상황에 투입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동원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대의 재난 동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제6항 및 제52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군사 목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부대 동원을 제한하며, 부대가 재난 현장에 투입될 때는 사전에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관이 동원 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하거나 안전관리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지시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의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부대 동원 등 국방·군사 목적의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 지원 요청에 의한 동원 외에는 부대 동원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난상황에 부대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부대의 안전관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2조(벌칙) <u><신 설></u> ① · ② (생략)	<u>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상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 지원 요청에 의하여 부대를 동원하는 경우 부대를 재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되는 부대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u> 제52조(벌칙) ①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하거나 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현행법에는 상관의 책무¹⁾에 관해서만 규정했을 뿐, 군 부대 동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²⁾, 군 부대는 재난 대응 외에도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국가 시책 사업, 대민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동원되고 있음.

이러한 군 부대 동원은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군 대민지원의 규모와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임³⁾.

□ 군 대민지원 등 군 부대의 동원이 증가하면서, 안전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난 대응에 투입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군 인력이 재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동원 과정에서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역시 존재함.

□ 개정안의 의도는 비군사적 목적으로 부대를 무분별하게 동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군 인력이 동원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 3)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함.

안전관리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상관이 동원 범위를 벗어나거나 안전관리 역량을 초과한 활동을 명령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동원 명령의 남용을 방지하여 군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무리한 재난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무리한 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지휘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의 국방·군사 목적 및 재난 지원에 의한 동원은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가기반시설 건설, 대민 지원 또는 대규모 행사에서의 군 동원이 국방·군사 목적 및 재난 대응 차원의 동원으로써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둘째,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점검 절차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재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장 투입 전의 안전관리 점검 의무화가 지휘관의 적극적 재난 대응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셋째, 개정안의 처벌 규정에 대한 요건이 불명확한 점이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대민지원, 대규모 행사 동원 등이 국방·군사적 목적의 동원에 해당하는지,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사망 사고 발생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칙을 규정함.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하는 처벌규정⁴⁾을 개정안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현장과 군 부대가 동원되는 재난현장 여건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 등과 군 지휘관의 소득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군 부대의 무리한 동원 명령을 제한하고, 군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동원 범위의 모호성 및 지휘권 위축 등의 문제점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① 일반 대민지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② 안 제52조제1항에서 처벌 대상인 상관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① 안 제36조제5항 중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② 재산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10억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